

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
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14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9.

발 의 자 : 박해철 · 차지호 · 김주영  
이수진 · 박균택 · 한민수  
김 현 · 박 정 · 송옥주  
임미애 · 민병덕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 전기공급이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결손액을 지원하고 있으며,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지원이 100%에서 75%으로 축소되고, 나머지 25%는 한전이 부담하도록 변경되면서, 전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로 인한 우려와 도서·벽지 지역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차질이 우려됨.

이에 현행법에 도서·벽지지역의 자가발전시설 인수, 전력공급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,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).



##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4항 중 “비용(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)”을 “비용에서 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(이하 “운영결손액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사용하는 비용(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)”을 “사용하는 비용의 운영결손액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운영에 드는 비용”을 “운영결손액”으로 한다.

다만,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가발전시설의 인수, 전기공급 및 운영에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.





<p><u>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)</u></p> <p>5. 제20조제4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<u>운영에 드는 비용을</u> 지원하는 비용</p>	<p><u>용의 운영결손액</u></p> <p>5. ----- -----<u>운영결손액</u>----- -----</p>
--	---